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148200·20진정0407700(병합)
교도소의 부당한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교도소장 외 14명<별지 1 기재와 같음>

주 문

00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9. 10. 21. ~ 2019. 10. 30. 기간 동안 진정인에게 뒷수갑, 머리보호대, 발목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9. 10. 21. 미결x수용동 중층 xx실에 수용되었다. 수용 당일 진정인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였고, 근무자가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자, 진정인은 근무자를 향해 폭언을 하고 거실문을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수용관리팀장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 사용 사유 및 보호실 수용 사유를 고지한 후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2) 피진정인들은 2019. 10. 21. 15:55~같은 달 22. 15:30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석식, 조식 및 용변, 세면, 의료과 진료 등을 위해 6회에 걸쳐 245분 동안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다.

3) 피진정인들은 2019. 10. 23. 진정인이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중식 및 용변 등의 사유로 같은 날 11:30부터 30분간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2:40부터 진정인의 용변 및 오후 출정 사유로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같은 날 19:30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중지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2019. 10. 24. 15:15 진정인이 근무자에게 또다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커서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같은 날 17:40부터 석식 및 용변 등의 사유로

50분간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를 하였으며, 다음 날 조식 및 용변, 세면 등을 위해 75분간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다. 그리고 2019. 10. 25. 10:00부터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였다.

5) 2019. 10. 27. 16:55경 진정인이 자신의 속옷(런닝) 밑부분 실을 풀어 매듭을 제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근무자가 진정인에게 금지물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응하였다. 이에 근무자가 거실문을 열고 변조물품을 회수하려 하자 진정인이 근무자의 다리를 붙잡고 허벅지 안쪽을 물어뜯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같은 날 16:55부터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피진정인들은 보호장비 사용 후 조식 및 석식, 소변 등을 위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다.

6)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중에도 식사 시간, 세면 시간, 면담 시간, 목욕 시간, 의료과 진료시간, 용변 등을 위해 진정인이 원하거나 담당근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동정관찰사항부, 보호장비착용자 동정관찰사항부, 근무보고서, 진정인 진술조서, 징벌의결서,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9. 10. 21.~같은 달 30. 기간 동안 진정인을 OO교도소 보호실에 수용하였고, 아래와 같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양손수갑 [별표 6: 앞수갑, 별표7: 뒷수갑],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1)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2019. 10. 21. 15:55~같은 달 22. 15:30 양손수갑(별표7)을 20시간, 머리보호장비를 19시간 55분,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대에도 위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였다.

2)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2019. 10. 23. 10:05~같은 날 12:40 양손수갑(별표7),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각 2시간 5분 동안 사용하였다.

3)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2019. 10. 24. 15:15~같은 달 25. 10:00 양손수갑(별표7)을 5시간 55분, 양손수갑(별표6)을 10시간 45분, 머리보호장비를 5시간 55분, 양발목보호장비를 16시간 4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대에도 양손수갑(별표6), 양발목보호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2019. 10. 27. 16:55~같은 달 30. 10:00 양손수갑(별표7)을 57시간 50분,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대에도 소변 등 사유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 위 보호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나.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에, 피진정인 1은 2019. 10. 21. 진정인

이 직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고 거실 문을 발로 차고 머리로 수 회 들이 받는 등 자해를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95조(보호실 수용) 및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보호2실에 수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에, 피진정인 1은 2019. 10. 23, 같은 달 24. 진정인이 직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는 등 흥분 상태에 있었고, 자살·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27.에는 진정인이 근무자의 허벅지를 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있어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구금시설의 보호장비 사용에 대하여 “행형법상의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408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유 소멸 시 사용중단’의 재량적 제한방식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 이상의 사용 가능성이나 착용자에 대한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1항에서는 교도관은 ①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시설 내 흥분상태 수용자에게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적용될만한 조항은 제1항 제2호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는 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항 제1호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제2호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보호장비 중 뒷 수갑은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보호실에 수용되었던 2019. 10. 21.~같은 달

22.(23시간35분), 2019. 10. 27.~ 같은 달 30.(65시간05분) 기간 동안 진정인에게 뒷 수갑 20시간, 57시간 50분, 양발목보호장비 21시간 40분,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22:00~06:00) 대에도 소변 등 사유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 진정인에게 계속해서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9. 10. 21.~같은 달 30. 기간 동안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와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흥분된 행동들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이후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진정인이 흥분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된 진정인은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3)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에 뒤틀 수갑은 앞 수갑의 방법으로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2019. 10. 21., 10. 23., 10. 24., 10. 27. 처음부터 뒤틀 수갑을 각 사용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단순히 진정인이 자살 및 자해, 타해 우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진정인에게 뒤틀 수갑을 사용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9. 10. 21.~같은 달 22., 2019. 10. 27.~같은 달 30. 기간 동안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관찰사항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동태사항 기록들을 볼 때, 피진정인들은 수면 시간 중에도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도 않았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정인에게 처음부터 뒤틀 수갑을 사용하고,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동안 뒤틀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 7. 13. 연속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취침시간 대(22:00~06:00)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10.)'을 마련하여 각 교도소에 시달하였는바,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개선사항의 철저한 준수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2.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희

위원 윤석희

<별지 1>

피진정인 명단

1. OO교도소장(現 OO지방교정청장)
2. 교감 000(現 OO지방교정청)
3. 교사 000
4. 교위 000
5. 교위 000
6. 교감 000
7. 교감 000
8. 교감 000
9. 교위 000
10. 교사 000
11. 교감 000
12. 교감 000
13. 교감 000
14. 교감 00(現 OO지방교정청)
15. 교위 000(現 법무부)

<별지 2>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갑
 - 2. 머리보호장비
 - 3. 발목보호장비
-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갑·포승: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보호장비의 사용)

- ①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 ①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제171조(보호장비의 사용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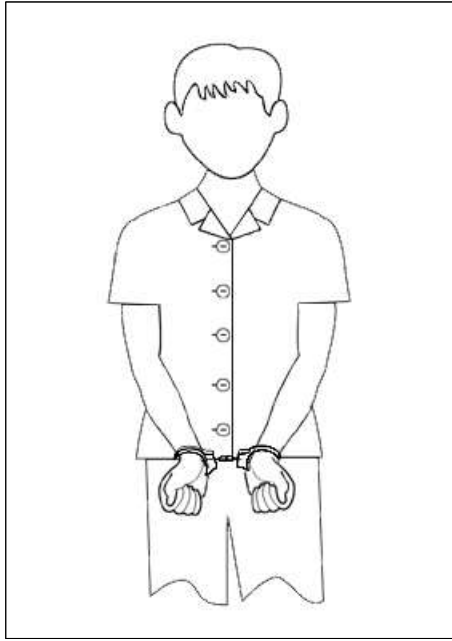
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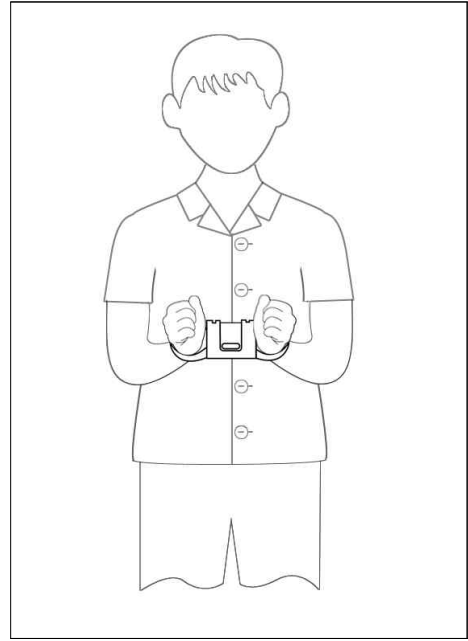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수갑 사용방법1(제172조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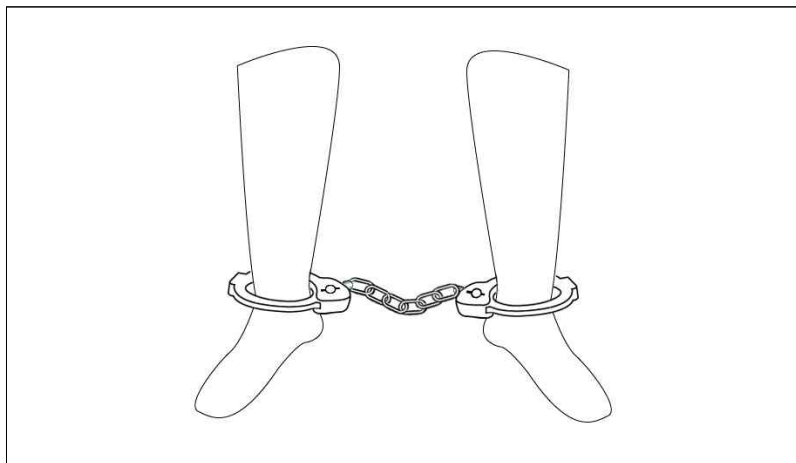
앞으로 사용



수갑보호기 부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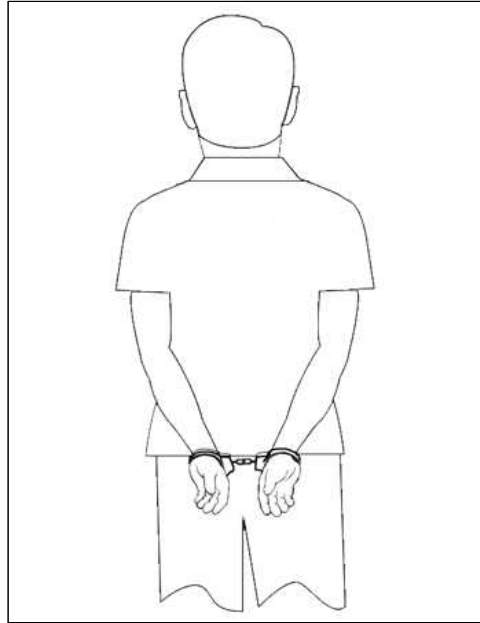
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1(제174조제1호 관련)



양발목보호장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수갑 사용방법2(제172조제1항제2호 관련)



뒤로 사용